

## 2025년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모집공고

『2025년도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 사업개요

- 기술적·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유출방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기술유출의 사전예방을 지원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19조)

### 2.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의 컨소시엄(과제) 형태로 지원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지원대상 자격요건 ]

| 구분       |      | 자격조건                                                                                                               |
|----------|------|--------------------------------------------------------------------------------------------------------------------|
| 컨소<br>시엄 | 도입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b>중소기업</b><br>* 해외연계과제의 경우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
|          | 공급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b>중소기업</b><br>- 보안솔루션(네트워크, 서버, PC보안 및 문서보안 등)을 보유하고, 해당 분야의 개발실적과 물리적·기술적 보안솔루션 공급능력을 보유한 기업 |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지분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참여제한

\*\* 공급기업 POOL(<https://www.ultari.go.kr/portal/psi/supplierList.do>)은 컨소시엄 구성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POOL에 없는 공급기업도 컨소시엄에 참여 가능

○ 지원제외 대상

1. 휴·폐업 중인 기업
2.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업,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등 영위기업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4. 최근 3년간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 기준 자본잠식(순자산이 자본금보다 적은 상태)에 해당하는 기업
  - \* 다만,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하다고 인정한 기업은 제외
5. 당해연도 기준으로 동일 사업 2회 이상 지원받았거나 지원예정인 기업
6. 최근 3년간 보안관련 제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
  - \* 예시 : 방산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
7. 기타 공고 또는 운영지침 등에 따라 참여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규모

○ 도입기업 4개사 내외

| 구 분  | 지원한도    | 지원자격                | 지원규모             | 사업기간   |
|------|---------|---------------------|------------------|--------|
| 일반   | 최대 4천만원 | 중소기업                | 총<br>사업비의<br>50% | 최대 4개월 |
| 해외연계 |         |                     |                  |        |
| 고도화  | 최대 2천만원 | 기 수혜기업중<br>고도화 수요기업 |                  |        |

\* 총 사업비 8,000만원(VAT 불포함)의 최대 50%, 4천만원 한도

\*\* 선정된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를 납품한 공급기업에게 정부지원금 지급

## □ 과제유형 : 일반과제 및 해외연계 과제, 고도화 과제

- (일반과제) 내부유출방지시스템, PC·문서 보안솔루션,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 출입통제 및 지문인식 등 단순 물리적 보안(장비구입 비용)의 경우 기업 자체 부담
- (해외과제) 해외진출 중소기업 중 국내 본사와 해외지사 간 통합 보안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단, 해외지사의 시스템 구축비용은 도입기업이 부담)
- (고도화과제) 기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바우처 연계, 상생형 포함)을 지원을 1번 받은 기업이 추가로 신청

###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주요 지원분야(예시)

#### ① 네트워크보안

- 방화벽 :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네트워크 간 트래픽 제어하여 불법적인 접근 차단
- 침입탐지 및 방어시스템(IDS/IPS) : 네트워크 내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실시간 탐지 및 차단하여 예방
- VPN, NAC 등

#### ② 데이터 보안 및 접근제어

- 문서중앙화 : 중요 문서를 개별 PC가 아닌 중앙 서버에 저장하여 유출 방지 및 접근 통제
- DLP : 내부 사용자에게 의한 중요 정보의 무단 전송 차단
- DRM : 중요 문서에 대한 권한 부여 및 추적 기능 제공
- 백업 및 복구 시스템 : 데이터 손실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백업 수행 및 복구 체계 구축

#### ③ 위험 탐지 및 대응

- 이메일 보안 : 악성 이메일 및 피싱 공격 차단하여 내부 정보 보호
- 네트워크 위험 탐지 및 분석 : AI기반 이상 행위 탐지 시스템 활용 비정상적인 네트워크 활동 모니터링
- EDR(엔드포인트 탐지) 정책설정 등

#### ④ 보안 관련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사용비

- (SaaS 기반) 클라우드 보안서비스 :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데이터 보호 및 접근 통제
- 보안 관련 S/W라이선스 이용 비용 지원

※ 2년 비용까지 지원

##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5. 8. 25(월) ~ '25. 9. 12(금)

□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에 신청([www.ultari.go.kr](http://www.ultari.go.kr))

- 신청절차 : 홈페이지 접속 → [사전예방] 메뉴 중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신청 버튼 클릭 → 중소기업 컨소시엄(도입기업+공급기업) 형태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 도입기업 신청 시 유의사항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공동인증서(법인)**로 로그인 후 사업신청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통합기술보호지원반 신청을 통한 수준 평가(전문가 현장자문)를 선행해야 하며, 기술보호 수준점수가 60점 이상 (100점 만점)인 기업만 신청 가능**(완료보고서 제출)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자문결과가 있는 중소기업은 통합기술보호지원반 신청 없이 기술보호 현장자문 완료보고서를 제출
  - \*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 - “사전예방” - “통합기술보호지원반” 신청 - 보안 1일/2일/3일 중 선택 - 전문가 매칭(상담 희망내용에 '보안시스템 구축 희망' 기재)
- 시스템 구축 비용에 있어 총 사업비의 전체 부가세를 도입기업이 부담해야 하며, 정부지원금(4천만원, 50%) 한도를 초과한 경우 도입기업이 초과 금액에 대해 부담
- 원가계산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협약포기 등으로 인하여 예산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후보기업 중 추가 선정하여 지원

### ※ 공급기업 관련 확인사항

- **공급기업**은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 “공급기업 등록현황”에 없어도, 사업신청 가능하며, **기업회원**으로 가입하면 공급기업 정보 입력 가능
- 공급기업은 사업 수행시 정부지원금과 도입기업 부담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함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가격제안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기술보호 수준평가 보고서 각 1부

| 사업 신청 서류 |                                                                                                                                                                                        |
|----------|----------------------------------------------------------------------------------------------------------------------------------------------------------------------------------------|
| 공 통      |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 각 1부                                                                                                                                                           |
| 도입기업     |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br>·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 1부<br>·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1부<br>·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br>· 우대사항 관련 증빙서류 1부(유효기간 아나)<br>· 기술보호 수준평가(전문가 현장자문) 결과보고 1부 |
| 공급기업     | · 가격제안서 및 견적서 1부 * 타사 제품 포함시 해당 공급사 견적서 필수<br>·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br>·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 1부<br>· 중소기업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1부<br>·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4. 과제 평가 및 선정

### □ 과제 평가일 : 9월 17일(수)

- 사업 신청서류 적합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면평가 세부 일정 안내
  - 도입기업/공급기업 과제책임자가 기업 현황 및 신청과제 세부내용 발표 (발표 10분·질의응답 10분)하므로, 발표자료(PPT)를 미리 준비

### □ 과제 선정

- 외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입기업의 기술보호 추진의지, 지원 당위성, 공급기업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원가계산을 통하여 최종 사업비 산정
  - \* 협약포기 등으로 인한 잔여 예산 발생 등의 사유로 후보기업 선정 가능

### □ 평가항목 및 배점

| 항 목          |            | 세 부 평 가 기 준                                                                     | 배 점 |
|--------------|------------|---------------------------------------------------------------------------------|-----|
| 도입기업<br>(75) | 기술보호 추진의지  | · 기술보호 투자 노력 및 의지(10)<br>· 기술보호 조직 형태 및 전담인력 보유 현황 (10)                         | 20  |
|              | 기술보호 노력 현황 | · 기술보호 관련 내규 수립 및 운영 (5)<br>· 임직원의 기술보호 인식 및 노력 현황(10)<br>· 핵심인력 관리 현황(5)       | 20  |
|              | 지원 당위성     | · 사업계획(구축 희망 시스템 도입)의 적정성 및 필요성(10)<br>· 구축희망 시스템 필요성에 대한 임직원 인식 현황 및 사업 이해도(5) | 15  |
|              |            | · 도입기업 기술 유출시 대내외 파급력 정도(15)<br>· 기술개발 실적 및 연구개발 관련 투자 현황(5)                    | 20  |
| 공급기업<br>(25) | 지원역량       |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역량 (6)<br>· 공급기업의 전문성 (4)                                        | 10  |
|              | 지원전략       |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선정의 타당성(5)                                                          | 5   |
|              | 사업관리       | · 시스템 구축 비용의 적정성(6)<br>· 구축 계획 및 사후관리 계획의 체계성(4)                                | 10  |
| 가점<br>(10)   | 우대사항       | · 세부 우대사항(10)*                                                                  | 10  |
| 합 계          |            |                                                                                 | 110 |

\* 우대사항 가점 중복적용 가능하나, 가점 총점은 10점으로 제한

## □ 우대사항

| 우 대 가 점 항 목                                                                                                                                                                               | 가 점   | 비 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부품·장비산업 100 선정기업</li> <li>·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현재, 차세대)</li> <li>· 월드클래스 300 선정기업</li> </ul>                                                         | 각 10점 | * 최대 3개,<br>10점까지 가점<br>인정<br>(유효기간 내<br>인증에 한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산(물자) 업체</li> <li>· 기술유출 및 탈취피해기업</li> </ul>                                                                                                    | 각 5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임치제도 활용기업</li> <li>· 글로벌 강소기업</li> <li>·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보유기업</li> </ul>                                                                         | 각 3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li> <li>·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li> <li>· 벤처인증기업</li> <li>·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사업</li> <li>· 영업비밀보호센터 관리시스템</li> </ul>              | 각 2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채용협약기업</li> <li>·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li> <li>· 가족친화 인증기업</li> <li>·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li> <li>·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li> </ul> | 각 1점  |                                                  |

## □ 협약체결 및 과제 수행

○ 선정된 과제의 컨소시엄(도입기업 + 공급기업)은 운영기관과 협약체결

\* 원가계산 결과 통보 후 2주 이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진행

## 5. 추진절차 및 일정(안)



\* 선정 후, 원가계산을 통해 운영지침에 맞게끔 사업비 조정

\*\* 사업 운영상, 일부 일정이 변동 가능성 있음

## 6.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운영하며, 운영기관은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허위사실 기재, 신청서 작성오류, 제출서류 미비 및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 책임이며, 과제 수행 시 부실·허위사항이 발생한 경우 운영지침에 따라 제재함
- 선정된 도입기업이 공급기업 또는 제3자로부터 영업수수료 명목의 현금 또는 현물 수령(리베이트), 제품 구매 조건에 따른 현물·현물 수령(페이백)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추후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된 도입기업, 공급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 및 지원 사업 참여 제한함

## 7. 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  
(02-368- 8762 / [prevention@win-win.or.kr](mailto:prevention@win-win.or.kr))